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537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4. 11. 6.

판결 선고 2024. 11. 27.

주 문

- 서산시 D 답 1,797㎡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8. 9.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9. 3. 29. 접수 제107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F 주식회사가 가지는 E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G 유한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2) J 유한회사는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1559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3. 2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J 유한회사에게 83,068,936원 및 그 중 20,498,552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4. 4.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나. E과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E의 아버지 망 K은 2018. 9. 21. 사망하였고, E은 망 K의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 등과 공동상속하였다(E의 법정상속분 2/15 지분).

2) 그런데 E은 2019. 3. 29.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피고가 상속재산인 서산시 D 답 1,79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E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녀들이 망인의 유지를 받들어 어머니인 피고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한 것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망인과 6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기여하였고, 망인은 배우자인 피고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한 이행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등으로 E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E의 2/15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영은